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8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전기통신 사업법	2203707	최민희의원	2024. 9. 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1.20.)
일부개정 법률안	2205231	한민수의원	2024. 11. 4.	상정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12, 13.)

-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 1. 6.)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
 - 6.)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

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 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2조의11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을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 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

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9까지"를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②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	
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	
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제22</u> 조의11제3항에 따른 전
	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
	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
	<u>다)</u>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u>각 호의 사항을 준수</u>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u><신 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

<u>④</u> ~ <u>⑦</u> (생 략)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 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
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
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underline{\mathbb{S}} \sim \underline{\mathbb{8}}$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5항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 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 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하당하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부가 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
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સો
<u>제5항</u>

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u><신 설></u> _____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 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 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 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 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 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 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 ·범위·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 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 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 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 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

제24조(사업의	양도・잉	수 등)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 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일부의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의전부 또는일부의폐업을명하여야한다.

제22조제
<u>5</u> ক্ট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0 0 0) 1
<u>.</u>

- 1. 2. (생략)
-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
 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 5. (생 략)
 <신 설>

4. ~ 6. (생략) ② (생략)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 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

1.• 2. (연행과 슅音)
3. <u>제22조제6항</u>
3의2. ~ 5. (현행과 같음)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1

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 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 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 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 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 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 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 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 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 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 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 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 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 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

2.·3. (생략)

② ~ ⑤ (생 략)

<u>제22</u> 조의9까지, 제 <u>22</u>
조의11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